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박성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977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8월 07일

발 의 자: 박성연,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태수, 박춘선,
신복자, 윤영희, 이은림,
임춘대, 홍국표 의원(11
명)

1. 제안이유

-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반려문화를 정착·확산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반려동물 보호의 기본 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 나. 시장으로 하여금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다. 반려문화 정착 및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라. 반려동물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반려문화를 정착·확산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 “반려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법 제2조제9호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유실·유기 반려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반려동물을 말한다.

제3조(반려동물 보호의 기본 원칙) 누구든지 반려동물을 사육·관

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적절한 방법에 따라 사육·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민과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반려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제8조에 따른 반려동물의 구조·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학대 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4조에 따른 동물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반려동물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 및 사업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실태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반려동물의 구조·보호) 시장은 유실·유기 반려동물 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반려동물(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유자가 학대하여 소유자로부터 적절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발견하거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라 구조 및 치료·보호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반려문화 조성 지원) ① 시장은 반려문화 정착·확산과 공공 시설 이용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반려동물 문화센터
2. 반려동물 놀이터
3. 반려동물 일시쉼터
4. 반려동물 장묘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자치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설치되는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금액과 부과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한부모가족 등 소외계층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반려문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화행사와 생명존중에 대한 시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반려동물의 날 지정)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정착·확산을 위하여 반려동물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반려동물 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반려동물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 보상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 대학·연구소, 동물 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반려견 놀이터나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26조 및 제27조를 삭제한다.